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02
- 제안자 : 장태용 의원 외 26명
- 제안일 : 2022년 10월 17일
- 회부일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동 조례는 2020년 서울시 차원의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나. 입법예고(2022. 10. 27. ~ 10. 3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2020년 5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동 폐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폐지 이유로 밝히고 있음.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이북지역의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u>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u></p> |

| | |
|---|---|
| <p>"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u>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u>(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p><u>추진하여야 한다.</u></p> <p><u>제6조(협의회의 설치)</u>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
|---|---|

- 동 조례는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 문화·체육·관광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동 조례안 제정 당시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원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 2016년 11월 남북 도시 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남북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었으며,

- 통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¹⁾’로 지정되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집중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여짐.

※ 동 조례의 제정 당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정치적·외교적 환경변화에 상대적인 영향을 덜 받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에 기여하고, 서울시가 추진중이었던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와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길 개척’ 등의 사업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이하 발췌).

-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사업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조례 제6조에서는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해 자문기관인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미설치 상태이며,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고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9년 당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2019.10.2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다.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도협력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한편, 동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완하는 입법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기존 조례가 이미 정하고 있는 사무의 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서울시 행정국의 정책 취지와도 일치하므로 금번 폐지 조례안에 동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 | | |
|------|-----|-------|-----|
| 전문위원 | 김정덕 | 입법조사관 | 이태기 |
|------|-----|-------|-----|